

소비자의 알권리와 LMO, GMO

김 대 규 / 변호사

1. 소비자 권리의 헌법상 보장

○ 헌법 제119조(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조정)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24조(소비자보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며...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 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

2. 소비자기본법

○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제5조(소비자의 책무)

-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업자의 책무)

- ① 사업자는 물품등을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

인정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LMO 법률)

- LMO를 수입 또는 생산하려는 자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위해성이 없음을 승인받은 때에 한하여 수입·생산할 수 있으며, 포장지 등에 LMO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 법 제24조 (표시)

-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령 제24조 (표시사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
- 4.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 5.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 법 제28조 (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국가책임기관,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법 제29조 (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 ①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7조 (정보이용·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국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 가. 수출국등의 명칭과 소재지
 -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일반적 기술
 - 다. 위해성평가의 요약문
 - 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치의 방법과 계획

4. 농산물품질관리법

○ 법 제2조 (정의)

7.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 법 제1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 ① 농림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시행령 제27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등)

-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로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으로 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
1.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관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2.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3.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농림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법 제28조의2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43조의2 (안전성 관련 정보의 심의)
-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는 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농약 및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
 3.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